서울특별시 마포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2012.4.16.
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2년 3월 20일 유동균의원 외 5명

나. 회부일자 : 2012년 4월 5일

다. 상정일자 : 제168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(2012년 4월 16일) 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유동균 행정건설위원장

가. 제안이유

동 조례안은 「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」에 따라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새마을운동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조직을 육성하고 지원함으로써, 새마을지도자의 사명감 고취와 사기 진작을 통한 지속적인 새마을운동 사업의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것임.

나. 주요내용

(1) 안 제2조에서는 "새마을 운동조직" 을 새마을운동마포구지회와 그 산하 조직인 새마을지도자마포구협의회, 마포구새마을부녀회, 직장·공장새마을운동마포구협의회, 새마을문고중앙회마포구지부,

그 밖에 새마을운동 관련조직 및 그 계통 조직으로 정의하여 용어 내용이 혼동되지 않도록 상위법에 근거하여 명확하게 표현하고자 하였음.

(2) 안 제3조에서는 마포구청장은 새마을지도자를 격려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하여 각 호에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함.

(가) 새마을운동조직과 관련된 각종 행사나 기념일에 새마을 사업 유공자 표창

(나) 불우 새마을지도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

(다) 그 밖에 새마을지도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(3)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은「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」에 따라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새마을운동의 계승 및 발전,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행사 경비, 새마을지도자 교육 및 연수, 그 밖에 구청장이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 및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.

(4) 안 제6조에서는 보조금의 지원 절차,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」및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준용하도록 규정함.

(5) 안 제7조에서는 구청장은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및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함.

3. 검토보고 (전문위원 명금길)

동 조례안은 새마을운동의 정신을 바탕으로 반세기 만에 경제대국으로 발전한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원동력이며 개발도상국의 모델로 자리매김한 새마을운동을 더욱 발전된 운동으로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한 육성과 지원을 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서,

상위법인「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」제3조 및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, 절차상으로도 우리 의회의 입법예고는 물론 집행부의 의견 조율 등을 거쳐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요지 : 없음

8. 기타사항 : 없음